수험표

시험명	제10회 빅데이터분석기사			
수험번호	010004657	시험구분	실기	
종목명	빅데이터분석기사(BAE)			
성명	김경민	생년월일	2001.02.07	# Kdan
시험일시	2025.06.21(토) 입실 09:10~09:30, 시험 10:00~13:00 · 09:10부터 입실 가능 및 09:30까지 입실 완료 · 09:30부터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, 시험 PC 점검, 본인 확인 등 실시 · 감독관의 별도 안내 전까지는 PC 사용 금지			
고사장소	 박분기 실기 (경기) 진영중학교 인성관 · 주소: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2번길 60 진영중학교 인성관 ※ 고사장은 원칙적으로 수험생 차량 주차가 불가하며, 주차 문제 발생 시 수험자 귀책으로 간주 			
준비물	· 신분증(신분증 인정범위 참조, 미지참시 응시 불가) · 수험표			

응시자 유의사항

유의사항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- 1. 응시자는 수험표에 표시된 시험일시 및 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, **시험이 시작된 10:00 이후에는 고사실에 입실할 수 없** 음
- 2. 수험원서(접수신청서) 및 답안을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
- 3. 접수된 수험원서,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응시료는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
- 4.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인정 범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, **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** 없음.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본인 확인은 시험 시작 전까지 완료되어야 함

[신분증 인정범위 : 모든 응시자 적용]

o 실물 신분증

- 1)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(유효기간 아내인 것))
- 2) 운전면허증(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- 3)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
- 4) 여구
- 5) 공무원증(장교·부사관·군무원 신분증 포함)
- 6)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(주민등록 번호가 표기된 것)
- 7) (구)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
- 8) 국가기술자격증
- 9)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
o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확인 서비스

- 1)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정부 24 ·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
- 2) 모바일 운전면허증(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)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3) 모바일 공무원증
- 4)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(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및 모바일 신분증앱에 발급된 것) 및 정부24, 카카오,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기술 자격 확인 서비스
- 5)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(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포함)

[대체신분증: 규정 신분증 발급에 불가세약이 있는 응시자에 한정 적용]

o 초·중·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

- 1)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(사진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)
- 2) 재학증명서(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(흑백, 컬러) 발급, 사진 · 생년월일 · 성명 · 학교장 직인이 표기 · 날인되고,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)
- 3)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 · 직인이 날인된 것)
- 4)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

1 / 2

5)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
o사병(군인)

1)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 확인 · 직인이 날인된 것)

o외국인

- 1) 외국인등록증
- 2)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
- 3) 영주증

[신분증 인정 기준]

- 1) 일체 훼손 · 변형*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 · 인정
- * 사진 또는 외지(코팅지)와 내지가 탈착 · 분리 등 변형이 있는 것,훼손으로 사진 ·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
- 2) 사진, 주민등록번호(최소 생년월일), 성명, 발급자(직인 등)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 \cdot 인정
- 3) 신분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 하지 않음 (대학교 학생증, 사원증,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, 신용카드 등은 인정불가)
- 5. 모든 전자통신기기의 전원은 종료해야 하며,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중에 기기에서 발생한 소음만으로도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됨
- 6. 시험 중 개인 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 및 소지가 가능하며,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착용 및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됨
- 7.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 등 일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음
- 8.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
- 9. 시험 관련 아래의 부정행위를 한때에는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되며, 앞으로 2년(시행기관 주관 민간자격) 또는 3년간(국가 기술자격)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

[부정행위 기준]

- ·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
- ·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
- ·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,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- ·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
- ·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
- ·고사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- ·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
- ·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
- ·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
- ·응시자가 시험시간에 전자통신기기*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 또는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
- * (전자통신기기) 휴대폰, 스마트워치·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기기, 태블릿, 휴대용 장치(컴퓨터, PDA, PMP, 카세트, 게임기등), MP3플레이어, 디지털카메라, 카메라 펜, 전자사전, 라디오, 미디어 플레이어 등, 전자식 표시기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, 위 유형과 유사한 그 밖의 전자통신기기
- ·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
- -실기시험 중 허가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 또는 검색하고 이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-실기시험 중 USB 등 허가되지 않은 장치를 응시환경에 연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
- 10. 시험 관련 아래의 행위를 한때에는 퇴실 조치되어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 처리됨

[시험 중지 및 무효(퇴실조치) 기준]

- · 휴대전화,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모든 전자통신기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 경우
- ·문제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 채 퇴실하거나,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옮겨 적어 밖으로 가져나가는 경우
- ·고사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시험을 방해하는 경우
- ·고사장의 각종 시설, 장비 등을 파괴, 손괴, 오손하는 경우
- 응시안내등을 통해 공지한 시험 중지 및 무효,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- · 기타 고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퇴장 또는 응시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
- 11.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일부 시험(시험시간이 3시간 이상 시험)만 시험 시작 30분 후부터 가능함. 화장실 이용 시에는 휴대폰 등 전 자통신기기나 시험과 관련된 어떠한 물품도 소지할 수 없으며, 이용 전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여 발견될 경우 시험중지 및 무효 또는 부정행위 처리됨
- 12.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동일한 종목의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음
- 13. 시험시간은 타종 또는 고사실 감독위원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끝남
- 14. 응시자는 정해진 시간(퇴실가능시간)이 지나면 퇴실할 수 있으나, 그전에 퇴실하면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됩니다.
- 15. 고사장의 책-걸상, 화장실 등의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며, 음료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답안지 또는 시설물 등의 파손은 응시자의 귀책으로 시험의 0점 처리 및 변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
- 16. 시험정보(문제, 답안, 채점기준, 응시자의 답안지 등)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며, 시험문제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채 퇴실하거나,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옮겨적어 밖으로 가져갈 수 없음

2 / 2